

학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학칙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념과 기독교정신을 바탕으로 동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라 한다)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09.01.]

제 2 조(편제) 본 대학교는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디자인대학, 글로벌경영학부, 외국어계열, 동아시아학과, 국제통상물류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사회복지학부, 관광학부, 경찰행정학과, 보건의료계열,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건축토목공학부, 화학공학부, 레포츠과학부, 민석교양대학, 미래커리어대학을 둔다.<개정 2006. 10. 01, 2007. 11. 19, 2008. 09. 12, 2009. 09. 01, 2014. 01. 01, 2015. 03. 01, 2016. 05. 13., 2016. 12. 16, 2018.02.01., 2018.08.06>

제 3 조(학부, 정원, 별도법인, 민석도서관, 부설연구센터) ① 각 학부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정원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 2016. 12. 16>

③ 본 대학교 내에 별도 법인으로 동서대학교산학협력단을 둔다.

④ 대학도서관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도서관 발전계획 수립,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의 예산, 조직, 자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민석도서관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6.03.25.>

⑤ 부설 연구센터로 방사선보건환경연구센터, 디지털영상디자인혁신센터, 유비쿼터스 어플라이언스 지역혁신센터, 3D 융합연구센터, 일본연구센터, 임권택영화연구소, 엠피언트 인텔리전스

3-1-1-2 제1장 학부

연구소, 퍼블릭디자인&라이팅연구소, 첨단아케이드게임지역혁신센터, 중국연구센터, 아시아미래디자인연구소, 인터랙티브 MR 융합 연구센터를 둔다. <개정 2007.11.19., 2010.03.01., 2012.09.01., 2014.01.01., 2015.06.15., 2017.09.01., 2017.12.01., 2018.09.01.>

⑥ 기타 부설 및 부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규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 장 수업연한·재학연한

제 4 조(수업연한) ① 본 대학교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단, 건축설계학전공은 5년으로 한다.

② 6학기 또는 7학기에 4학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논문심사에 합격한 자로서 전 과정 성적 평균이 4.30(A)이상인 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③ 조기졸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조(재학연한) ① 본 대학교의 재학연한은 8년(5년 과정의 건축설계학전공은 10년)으로 한다.

단, 재입학자와 편입학자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할 연한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본 대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학적을 상실한다. 단, 장애학생의 재학연한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3 장 학년·학기·수업일수·휴업일

제 6 조(학년 . 학기) ① 학년은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년은 다음과 같이 두 학기로 나누며, 이와는 별도로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하기 휴가 중에 계절학기를 둘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 ~ 8월 31일

2. 제2학기 : 9월 1일 – 이듬해 2월 말일

③ 제 1항 내지 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상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학년과 학기의 기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7.03.01.>

제 7 조(수업일수 및 심화학습주간) ① 수업일수는 매학년 30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기별 학점당 이수시간 내에서 교과목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6조 2항에 따른 학기보다 단축된 기간을 정하여 강의를 개설할 수 있고, 계절학기를 두는 경우 계절학기의 수업기간은 3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학점당 이수시간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단, 계절학기 수업기간은 수업일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개정 2017.09.01.>

② 제 1학기 중 1주 이내로 심화학습주간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

③ 매 학기 기말고사 직전 주간을 보강주간으로 운영 한다.

제 8 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01.>

1. 하계 및 동계방학

2. 근로자의 날

3.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② 휴가기간 및 임시휴업일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휴업일이라도 필요할 때에는 수업을 과할 수 있다. <개정 2014.09.1.>

제 4 장 입학·편입학·재입학

제 9 조(입학시기) ① 입학의 허가는 총장이 행한다.

② 입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 학년 초 30일 이내로 한다. 단, 재입학 및 편입학 시기는 매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제 10 조(입학자격) 본 대학교 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

3-1-1-4 제1장 학부

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2.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
3.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4.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전 각 호 1에 해당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자

제 11 조(지원절차) ① 본 대학교에 입학을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 기일

내에 수험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출한 서류와 납입한 수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입학원서(소정양식)
2.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기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출신학교 성적증명서
4. 기타 필요한 서류

제 12 조(입학사정) ① 입학지원자에 대한 사정은 다음 각 호의 성적을 종합하여 사정하되, 그 일

부를 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성적반영비율, 입학사정방법, 필기시험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

1.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2. 출신고교의 내신성적
3. 대학별고사의 성적
4. 실기고사성적
5. 면접고사성적 등

② 특성화고졸재직자 전형은 면접성적과 경력점수를 병과하여 사정한다. <개정 2017.09.01.>

③ 입학사정에 사용된 전형 자료에 주요 사항이 누락되거나 허위 또는 부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09.01.>

④ 본교 및 타 대학에서 제3항에 따라 입학이 취소된 자의 경우 입학이 취소된 날로부터 3년

간 본교에 입학할 수 없다. <신설 2017.09.01.>

제 12 조의1(대학 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①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적성·인성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16.06.10>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6.06.10>

제 13 조(입학자 구비서류) ①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수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 14 조(보증인) <삭제 2013.03.01>

제 15 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편입학 할 수 있는 자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인정된 학교에서 해당 학년을 수료 또는 졸업한 자 이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자격)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6.03.25.>

③ 학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다른 학부의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학년에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인원은 해당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준한다. <개정 2016.03.25.>

④ 본 대학교와 연계교육이 체결된 전문대학에서 협약에 의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졸업자)는 정원 외 3학년 편입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모집인원은 해당년도 대학 편입학 전형 기본계획에 준한다. <개정 2016.03.25.>

제 16 조(재입학) ①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지원할 때에는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재입학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5 장 등록·수강신청

제 17 조(등록)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은 수강신청과 소정의 납입금의 납부로써 완료된다.

제 18 조 (장애학생 학점등록) ①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학점등록을 허가하고 신청 학점에 해당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② 학점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조(수강) ① 학생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수강할 교과목을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 아 정한 다음 직접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09.1.>

② 수업의 1/3선 이내에 수강변경을 할 수 있으며 수강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수강 변경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9.1.>

③ 학업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학생, 수업진행을 크게 방해하는 학생에 대해서 담당교수는 학 생의 수강등록을 취소케 할 수 있다.

④ 전공배정 대상학년의 수강신청은 전공배정 이후에 실시하며, 전공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 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6 장 학부이동

제 20 조(자격) ① 학부이동은 1회에 한하여 제 2 학년 1학기 초, 제 3 학년 1학기 초 및 제 4학 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단, 3학년 편입생은 제 3학년 2학기 초 또는 제 4학년 1학기 초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② 학부이동은 소속학부 입학정원의 30%까지 허용하되 전학기까지 이수한 전교과목의 평균

평점이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학부이동을 지원하는 자가 허가예정 인원을 초과할 때에는 선발고사를 행할 수 있다.

④ 특기자로 입학한 자는 다른 학부로 이동할 수 없다.

제 21 조(절차) 학부이동을 지원하는 자는 소정의 지원서에 지도교수 및 학부장의 승인을 받고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원한다.

제 22 조(이수과목) ① 학부이동한 자는 당해 전입전공 및 학부의 소정과목 전부를 이수하여야 한다. 단, 기득학점 및 성적은 전입 학부장이 인정할 수 있다.

② 학부이동한자의 재학년한에는 종전의 재학한 년한을 통산한다.

제 7 장 휴학·복학·퇴학·제적

제 23 조(일반휴학) ① 학생이 부득이한 사유로 학기 휴학하고자 할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지도교수, 학부장 및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01>

② 휴학은 1회에 2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재학 기간 중 6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질병, 병역, 임신·출산·육아, 1년 이상의 외국유학과 어학연수, 숙려휴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학생에게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0.10.01., 2013.03.01., 2014.09.01.>

③ 창업휴학일 경우 4학기까지 휴학이 가능하며, 2학기의 휴학기간에는 합산하지 않는다. <신설 2014.03.01.>

④ 숙려휴학은 1회에 한하여 한학기까지 휴학할 수 있다. 단 한학기 휴학으로 인하여 교과이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두학기까지 연장할 수 도 있다. <신설 2014.09.01.>

제 24 조(군입대휴학) ①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군입대(지원입대 포함)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3조 제1항의 절차에 의하여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기간은 제23조 제2

3-1-1-8 제1장 학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0.01>

② 일반휴학 기간 중에 군에 입대할 경우에는 휴학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5 조(복학) ① 휴학기간의 만료 및 휴학사유의 소멸로 복학을 원할 때에는 당해 학기의 등록기간 중에 복학원을 제출하여 학부장과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할 수 있다.

② 군제대 복학은 제대 후 1년 이내에 한하여 허가하며, 군제대 일자가 수업일수 1/3이내일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0.01>

제 26 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보증인 연서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도교수와 학부장의 승인을 받고 교무처장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 27 조(제적)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 제적한다. <개정 2012.09.01.>

1. 휴학기간 경과 후 다음 학기에 복학하지 않는 자
2. 매학기 소정의 등록기간 중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는 자
3.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개정 2010.10.01., 2012.09.01., 2015.03.01.>
4. 이중 학적 자
5.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 8 장 교과·수업·학점·졸업

제 28 조(교과목 구분) ① 교과목은 교양 교과목과 전공 교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09.01., 2017.03.01., 2018.09.01.>

② 교양 교과목은 필수과목(대학정책, 학부기초)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2018.09.01.>

③ 전공 교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09.01.>

④ 산학과목은 수강신청 이전에 산학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교과목 심사를 통하여 특정 전공의

전공과목으로 개설 할 수 있다. <신설 2012.06.01.> <개정 2018.03.01.>

제 29 조 (학점 및 수업) ①교과이수의 단위는 학점으로 하고 학기당 15시간 수업을 1학점으로 한다. 단, 실험, 실습, 실기 등을 수업시간 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② 수업방법은 통상적인 출석수업, 방송·통신 등에 의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0.12.10.>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학사일정 계획에 없는 휴강을 할 경우 휴강시스템에 사유와 함께 입력하고 보강하여야 하며 보강결과보고서를 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03.01.>

제 30 조(특별학점) ① 각종 시험 및 자격증에 의한 특별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② 특별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 31 조(과정이수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130학점 이상으로 하고, 과정별 이수학점은 연도별 교육과정에 의한다. <개정 2010.03.01>

1. 일반학과(전공) : 130 학점

2.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 140 학점

3. 건축설계학전공: 165 학점

제 32 조(학기당취득학점) 매 학기 최대취득 학점은 1학년 18학점 그 외에는 19학점으로 한다. 단, 외국인학생, 조기졸업, 국외 타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학·석사연계과정, 8학기 졸업학점이 140이상인 학과(전공) 등 시행세칙에서 정한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9.1., 2009.12.04., 2010.09.01., 2014.01.01., 2017.03.01., 2017.09.01.>

제 32 조의 1(수료학점) 각 학년의 인정학점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03.01., 2011.03.01>

1. 제 1학년 : 33학점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 35학점)

2. 제 2학년 : 65학점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 70학점)

3. 제 3학년 : 98학점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 105학점)

3-1-1-10 제1장 학부

4. 제 4학년 : 130학점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 140학점)

5. 제 5학년 : 165학점

제 33 조 (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 <개정 2007.11.19., 2016. 11. 1>

② 공학교육의 발전과 우수한 공학기술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공학교육인증과정을 시행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7.11.19>

제 34 조(졸업·학위·학위취소) ① 졸업예정자는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단, 학부에 따라서는 실기발표, 졸업논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졸업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③ 소정의 전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서식 1)에 의하여 (별표 2)의 학위를 수여한다. 단, 졸업종합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고 수료증서(별지서식 2)를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2017.12.01.>

④ 학위를 받은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졸업사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5.03.01.>

제34조의1(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위수여요건)(2008년 3월 1일 조문 신설)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교양 30학점, 전공 60학점이상, 총 140 학점 이상을 인정받은 자

3. 본 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에서 취득한 학점이 84학점 이상인 자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자가 본 대학교 총장이 수여하는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학점을 인정받은 후, 학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소정기간 내¹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1.>

③ ①, ②항에 의한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한 자에게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심의를 거쳐 학위를 수여²
한다. <개정 2015.03.01.>

④ 제3항에 의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 학위의 종별 및 전공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하되, 표준교육과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4조 ③항에 의한 학위종별 및 전공에 따른다.

제34조의2(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국외 타대학과 학술교류협정에 의하여 교육
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9.12.04> <개정 2010.11.01>

②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따른 학위의 수여는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내대학과 외국대학과의 공동명의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10.11.01>

③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09.12.04>
<개정 2010.11.01>

④ 외국의 학위종별 분류가 (별표2)의 학위명칭과 다른 경우에 협정에 의해 별도의 학
위명칭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03.01>

제34조의3(졸업유예) ① 모든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계속 수학하기를 희망 할 경우, 총장은 2
학기 범위 내에서 졸업유예를 허가 할 수 있다. <신설 2010.02.01>

② 졸업유예 허가를 받은 학생은 유예 학기마다 1과목 이상 수강신청을 하여야 하고, 학칙시
행세칙 제87조에 의한 등록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신설 2010.02.01> <개정 2015.03.01>

제 9 장 전공·부전공·복수전공·연계교육

제 35 조(전공학점) 졸업에 필요한 전공학점은 교과과정에 의한다.

제 36 조(부전공) ① 재학 중 주전공 이외의 전공에 개설된 소정의 부전공 과목을 이수한 자에게는 부전공을 인정하여, 증서에 이를 표시하고 학적부에 기록한다.

② 부전공의 이수는 당해 학부의 전공과목 중에서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부전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 37 조(복수전공) ① 복수전공은 전공배정 후부터 이수할 수 있으며, 취득학점은 당해 학부의 전공과목 중 최소한 32학점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7.09.01.>

③ 복수전공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7 조의2 (교양학사학위트랙) ① 민석교양대학에 교양학사학위트랙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9.01.>

② 교양학사학위트랙은 (별표 6)과 같다. 단,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개정 2017.09.01.>

③ 교양학사 복수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교양학사학위트랙에서 32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

④ 교양학사학위트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시 전체성적의 평점평균이 2.0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7.09.01.>

⑤ <삭제 2018.03.01.>

[본조신설 2016. 12. 16]

제37조의3 (학·석사연계과정)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을 운영한다.

② 5년제 학·석사연계과정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석사연계과정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09.01.]

제 38 조 (연계교육) ①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삭제 2010.09.01>

③ 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38 조의2 (연계전공) ① 2개 이상의 학문분야를 결합하거나 주제들을 중심으로 연결한 연계전공 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03.01>

② 제1항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연계전공은 [별표 5]와 같으며, 제1전공으로 이수할 수 없다. <신설 2012.03.01>

③ <삭제 2018.03.01.>

제 10 장 시험·성적

제 39 조(시험) 시험은 매학기 기말시험을 포함하여, 2회 이상 실시한다.

제 40 조(시험방법) 시험은 필답에 의하되, 교과목의 성질에 따라 구술 또는 논문 등에 의할 수 있다.

제 41 조(학점취득제한) 학생은 출석하여야 할 시간수의 3분의 2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취득할 수 없다. <개정 2010.10.01>

제 42 조(추가시험)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정기시험에 응할 수 없는 자는 사전에 소속 학부 장 및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시험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 그 성적은 B+급을 초과할 수 없다.

제 43 조(성적평가) ① 학업성적은 각 교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고 출석, 시험성적 및 과제물

3-1-1-14 제1장 학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5.03.01.>

제 44 조(취득학점) 학과목별 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선정하며 D급 이상을 급제로 하고 F를 낙제로 한다.

등급	평점	점수
A+	4.5	95~100
A	4.0	90~94
B+	3.5	85~89
B	3.0	80~84
C+	2.5	75~79
C	2.0	70~74
D+	1.5	65~69
D	1.0	60~64
F	0	0~59

제 45 조(학점인정) ① 재학생이 본 대학교와 학점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대학 및 전문교육기관과 본 대학교 부속기관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학점과 성적은 인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와 방법은 따로 정한다.

② 수시모집 등에 의해 입학이 확정된 자가 입학 전에 본 대학에서 개설한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입학 후 3학점 범위 내에서 인정 할 수 있다.

③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 중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 인정을 받은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방송,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 하여 원격수업과정을 이수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학점 인정의 상한은 학기당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12.03.01.>

④ 창업동아리 활동을 현장실습교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최대 3학점 까지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03.01.>

제 46 조(학사경고) 매학기 성적의 평점평균이 1.5미만인 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하며, 학사 경고를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는 성적불량으로 제적된다. 이에 관한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01.01., 2015.03.01.>

제 11 장 포상·징계

제 47 조(포상) 총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또는 선행이 타의 모범이 될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 48 조(징계)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2. 학업성적이 열등하여 성업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3.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이 무상한 자
4. 면학질서를 저해하거나 학교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자
5. 학칙 기타 학생징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제적으로 구분된다.

제 12 장 등록금

제 49 조(등록금 납부) 학생은 매학기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 50 조(등록금 통지) 등록금의 납부기일과 등록금액을 등록기간 전에 통지한다.

제 51 조(기타 납입금) 학술활동 및 연수 등에 관한 비용은 별도로 실비금액을 징수 할 수 있다.

제 52 조(등록금 반환) ① 납입한 금액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한다.

② 등록금 반환기준은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03.01.>

제 53조 (등록금 심의 위원회) ① 본 대학의 등록금 책정을 위하여 교직원, 학생, 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진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둔다. <신설 2010.12.10>

②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10>

제 13 장 외국인 학생

제 54 조(외국인 특별생) 외국인으로서 본 학칙 ‘제 4장 입학·편입학·재입학’에 의하지 않고서 입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본교 ‘외국인학생 입학 및 등록규정’에 의거하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06.01.>

제 55 조(증서수여)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교과이수의 정도에 따라 이수증서를 수여한다.

제 56 조(외국인 특별생의 편입) 외국인 특별생으로서 학력을 점검한 후 정규학생과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규학생으로 편입학 시킬 수 있다.

제 57 조(학칙적용) 외국인 특별생에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학칙을 적용한다.

제 14 장 공개강좌

제 58 조(공개강좌) 본 대학교에 실무 또는 연구에 필요한 이론과 응용에 관한 지식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개강좌를 들 수 있다.

제 59 조(공개강좌의 개설) 공개강좌의 제목, 기간, 장소, 수강자격 및 정원, 기타사항은 개강 시마다 총장이 이를 정하여 발표한다.

제 60 조(수강료) 공개강좌의 수강생에 대하여 실비에 해당하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 15 장 교수회

제 61 조(교수회) 본 대학교의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수회를 둔다.

제 62 조(구성) 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9.01>

제 63 조(소집) 교수회는 총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 64 조(심의사항) ① 교수회는 총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학부이동, 편입학, 재입학포함), 졸업 또는 진급에 관한 사항
2.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3. 시험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로 한다.

제 16 장 교무위원회

제 65 조(교무위원회) 본 대학교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종합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제 66 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 처실장, 학장, 학부장 및 총장이 지정하는 부속기관장으로 구성 한다. 단, 총장은 필요에 따라 이외의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발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3.01.>

제 67 조(소집) 교무위원회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 68 조(심의사항)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1. 학칙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학부 및 부설기관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기타 대학운영에 관한 사항

제 17 장 교원인사위원회

제 69 조(교원인사위원회) ①본 대학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그 외 교원인사 및 교원인사위원회와 관련 된 제반사항은 본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교원인사위원회 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 18 장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제 70 조(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대학 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를 둔다.

제 71 조(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 구성) 전조의 대학입시공정관리대책위원회는 총장 직속으로 설치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19 장 직제

제 72 조(직제) 본 대학교의 직제는 따로 정한다.

제 20 장 학생활동

제 73 조(총학생회 설치) ① 학생의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본교 교육이념 구현과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진리탐구 및 자치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동서대학교 총학생회(이하

"총학생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본 대학교 학생은 본 대학교에 등록함과 동시에 총학생회 회원이 되며 제적 또는 자퇴와 동시에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③ 총학생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④ 총학생회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그 활동이 정지된다.

제 73 조의 1(총학생회비) ① 총학생회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학생회비는 학생회 자율로 수납하되 수납된 회비는 학생처장이 관리하며 수납, 예산 편성, 집행에 관하여는 학교의 승인과 지도를 받는다. <개정 2010.09.01., 2015.03.01.>

제 73 조의 2(학생대표 자격 및 선임방법) ①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로서 학생자치단체 선거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한다.

1. 학업성적이 평균평점 2.7이상인 자 <개정 2009.9.1>
2. 4학기이상 6학기이내 등록한 학생. 단, 보궐선거 시 7학기 가능
3. 징계에 회부중이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4. 선거권자의 10%이상 추천을 받은 학생(단, 총학생회장 정·부 선거시)
5. 학생처장이 위 각 호를 확인 후 등록 <개정 2008.1.30., 2010.09.01., 2015.03.01.>

②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으로 선임된 자는 총장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과 기타 간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④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정·부회장, 기타 간부는 학칙에 의한 징계처분(무기정학이상)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전④항에 의해서 자격을 상실한 총학생회 및 학생자치단체 회장의 잔여임기가 2/3이상일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 선출하고 잔여임기가 2/3미만일 때에는 차순위자가 업무를 대행한다.

제 74 조(학생지도위원회) ① 건전한 학생자치활동을 지도,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3-1-1-20 제1장 학부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지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한다.

제 75 조(학생활동 및 단체조직의 승인) ① 총학생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학생단체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총장의 승인에 의하여 승인된 단체는 그 목적 외의 활동을 금하여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제 76 조(학생활동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제 77 조(학생활동의 금지)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대학교의 기본기능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개정 2006.10.1.>

2. 기타 교육목적 및 학내질서유지에 위배되는 행위 <개정 2006.10.1.>

제 78 조(학생지도) ① 총장은 매 학년 초에 학생지도계획을 수립하고, 학생지도를 위하여 지도교수를 임명한다.

② 지도교수는 학생이 건전한 학풍을 지닌 창조적인 인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 79 조(학생활동의 사전승인)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목적, 개최일시, 장소, 참가예정인원 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동아리활동에 관한 집회 <개정 2015.03.01.>

2. 교내외 광고, 인쇄물의 첨부 또는 배부

3. 각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한 학생활동 후원요청 또는 시상의뢰

4. 외부인사의 학내초청

제 80 조(간행물발행) 학생단체 또는 학생의 모든 정기, 부정기, 간행물은 지도교수가 지도하고 인쇄된 간행물은 배포 전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1 조(처벌) 본 장의 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 제적된 자(타교에서 제적된 자 포함)는 편입학 또는 재입학 할 수 없다.

제 21 장 시간제 학생 등록제

제 82 조(목적) 열린교육사회 체제와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산업체근로자 및 일반인의 교육확대를 위하여 시간제학생 등록제를 둔다.

제 83 조(자격 및 선발) 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중에서 고등학교 성적, 면접고사 및 산업체 경력으로 선발한다.
②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 84 조(학점신청) ① 시간제학생 등록 이수학점은 매학기 9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등록금은 학점당 등록제를 한다.

제 85 조(기타) 시간제학생 등록제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 22 장 학교기업

제 86 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하여 본 대학교 교지(주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47(주례동) 내에 학교기업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본 대학교에 설치된 학교기업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각 학교기업의 사업종목 및 연 계학과는 (별표 4)와 같다.

1. DSM&C(동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컴퍼니)
2. Animotions(애니모션)

제 87 조(학교기업의 현장실습 활용) ①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에 대하여 총 18학점까지 인정할

3-1-1-22 제1장 학부

수 있다. 단, 1개 학기당 인정 학점은 15학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10.03.01>

②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을 1개 학기 당 30시간 이수한 경우 이를 1학점으로 인정한다.

③ 기타 학교기업에서의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 88 조(학교기업의 보상금 지급 기준) ① 학교기업 운영성과 결산 결과 순이익 발생 시 순이익의

2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을 줄 수 있다.

② 교직원 1인당 연간 보상금은 순이익의 5%를 넘을 수 없다.

③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 형태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등록금 총액을 넘을 수 없다.

④ 제②항,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하여 교직원 또는 학생이 특허 등 산업체재권을 제공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금은 별도 기준에 의해 지급할 수 있다.

⑤ 학칙에서 정하지 않은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기준은 별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23 장 자체평가

제89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

한다. <신설 2009.9.1>

② 자체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9.9.1.>

제24장 학칙개정

제90조(학칙개정) ① 본 학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학칙개정의 필요성, 내용, 효과 및 시

행예정일에 관한사항을 기획연구처에 제출한다.

② 각 부서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수합·정리하여 검토 후 개정내용에 대해 관련 부서와의 협의

를 거친 후 심의를 의뢰한다.

③ 심의한 학칙개정안을 대학평의원회의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④ 대학평의원회와 교무위원회에서 심의된 학칙 개정안을 총장 결재 후 확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변경학칙은 199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제적학생 구제를 위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개전의 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1항 및
제7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3. (입학시기에 관한 특례) 대학학생정원령(대통령령 제13,875호 1993.

4. 2) 제2조 제3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1993학년도 제1학기
에 재입학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993년 4월 30일까지 재입학을 허가
할 수 있다.

부 칙

3-1-1-24 제1장 학부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부로 통합되기 전에 학과에 재학 및 휴학중인 학생들은 입학당시 입학한 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1996학년도 신입생부터는 학부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변경학칙은 1997년 3월 18일부터 시행하되, 199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에 상경정보학부 국제관계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국제관계학부 국제통상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3. (동전)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에 상경정보학부 경영정보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회계정보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상경매스컴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한다.

4. (동전) 이 변경학칙에 불구하고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야간)은 1999학년도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보되, 휴학 등으로 인하여 산업디자

인학전공(야간)으로 입학한 자가 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야간)으로 입학
한 자와 동일학년에 복학 할 경우에는 시각정보디자인학전공(야간) 소
속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도시공학부는 건설공학부, 도시공
학부 교통정보공학전공은 건설공학부 건축설계학전공, 시스템공학부는
정보시스템공학부,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전공은 디자인학부 생산디자
인전공에 재적자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신설·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폐지된 전공의 재학생은 소
속학부 인원으로 보고 폐지된 전공의 복학생은 본인이 원하는 전공으로
변경할수 있다.

3. (동전)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식품공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식품생명공학전공의 재적생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1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 또는 소속편제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속전공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부 및 전공소속의 재적생으로 본다. 단, 폐지된 전공의 재학생은 소속학부 인원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3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2년10월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2004년 3월 1일 이전에 입학하여 재적중인 자에 대하여는 구 학칙(별표3)을 적용한다.

3. (경과조치) 2004학년도부터 건축설계학전공의 수업년한이 5년으로 변동되므로 이전에 건축설계학으로 전공이 배정된 학생의 수업년한은 4년을 원칙으로 하며 원하면 5년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설립 및 첨단기술연구센터의 명칭변경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부설연구센터 중 디지털콘텐츠센터의 삭제는 200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전공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학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학생으로 본다.

부 칙

3-1-1-28 제1장 학부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5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부(전공)의 명칭변경 또는 소속 편제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속전공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부 및 전공소속의 재적생으로 본다.

② 이 변경학칙 시행이전의 국제관계학부 국제관광학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관광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영상매스컴학부 애니메이션전공, 재적하고 있는 자는 디지털콘텐츠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영상매스컴학부 영화(Film&Video) 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보며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및 연극영화연기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임권택영화예술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직제규정 2008.1.30>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⑯ 생략

⑯ 학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2 제1항의 제5호 중 ‘학생취업복지처장’ 을 ‘학생복지처장’ 으로 한다.

⑰ – ㉑ 생략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장 제85조 변경사항은 2008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장 32조, 제20장 제72조의2 1항 1호 개정사항 및 제23장 88조 신설 사항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직제규정 2010.09.01>

1. 이 개정규정은 2010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다른 규정의 개정) ① 학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의1 제2항 및 제72조의2 제1항의 제5호 중 ‘학생복지처장’ 을 ‘학생취업복지처장’ 으로 한다.
② ~ ⑦ 생략

부 칙

3-1-1-32 제1장 학부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8조 개정사항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0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제 41 조에 변경에 따른 학사일정 및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2011학년도 부터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0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1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

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1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2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2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개정학칙은 2013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3조(학부, 정원, 별도법인, 부설연구센터)의 1항 별표1의

2014년 입학정원표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1-1-34 제1장 학부

2. (경과조치) 2014년 3월 1일 이전의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환경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에 재적하고 있는 자는 디자인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자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학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 학부(전공)의 명칭변경 또는 소속 편제가 변경된 경우, 이전 소속전공의 재적생은 변경된 학부 및 전공소속의 재적생으로 본다.
3. (경과조치) ① 제27조(제적), 제46조(학사경고)의 학사경고 통산 4회 제적의 경우는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1-1-36 제1장 학부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규정) 제3조 제5항은 인터랙티브 MR 융합 연구센터 규정 시행일 (2018년 1월 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학부(전공)의 명칭변경으로 편제가 변경된 경우, 소속된 재적생은 변경된 명칭의 재적생으로 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8.08.06.>

2019학년도 입학정원표

대학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140	공학	
		영화과	40	예·체능	
		뮤지컬과	30		
		연기과	30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학전공	180	예·체능	
		패션디자인학과	40		
인문·사회	글로벌경영학부	경영학전공	180	인문·사회	
		영어학과	50		
		일본어학과	50		
		중국어학과	60		
		동아시아학과	20		
	국제통상물류학부	국제통상학전공	130		
		국제물류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20		
		방송영상전공	120		
		광고PR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110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150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경찰행정학과			
보건의료계열	보건의료계열	보건행정학과	40	인문·사회	
		임상병리학과	40	자연과학	
		간호학과	60	자연과학	
		치위생학과	40	자연과학	
		방사선학과	40	자연과학	
		작업치료학과	40	자연과학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160	공학	
공학	컴퓨터공학부		190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160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화학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전공	125	공학	
		생명화학공학전공		공학	
		식품영양학전공		자연과학	
	레포츠과학부	운동처방학전공	90	예·체능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40		
미래커리어대학	미래ICT융합학부		10	공학	
	경찰사법학부		10	인문·사회	
총 계			2,435		

<개정 2017.06.02.>

2018학년도 입학정원표

대학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140	공학	
		영화과	40	예·체능	
		뮤지컬과	30		
		연기과	30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학전공	180	예·체능	
		패션디자인학과	40		
인문·사회	글로벌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00	인문·사회	
		영어학과	50		
	외국어계열	일본어학과	50		
		중국어학과	60		
		동아시아학과	20		
	국제통상물류학부	국제통상학전공	130		
		국제물류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20		
		방송영상전공	120		
	사회복지학부	광고PR전공			
		사회복지학전공	110		
	관광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			
		호텔경영학전공	150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보건의료계열	경찰행정학과	40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40		
		임상병리학과	40		
		간호학과	60		
		치위생학과	40		
		방사선학과	40		
		작업치료학과	40		
공학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160	공학	
			190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160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화학공학부	신소재화학공학전공	125	공학	
		생명화학공학전공		공학	
		식품영양학전공		자연과학	
예·체능	레포츠과학부	운동처방학전공	90	예·체능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40		
총 계			2,435		

<개정 2016.05.13.>

2017학년도 입학정원표

대학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140	공학
		영화과	40	예·체능
		뮤지컬과	30	
		연기과	30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학전공	180	예·체능
		패션디자인학과	40	
인문·사회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인문·사회
		글로벌금융전공	200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50	
		일본어학과	50	
		중국어학과	60	
		동아시아학과	20	
		국제통상학전공		
	국제학부	국제물류학전공	130	
		International Studies과	20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	120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전공	110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150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경찰행정학과	40	
자연과학	보건의료계열	보건행정학과	40	인문·사회
		임상병리학과	40	
		간호학과	60	
		치위생학과	40	
		방사선학과	25	
		작업치료학과	40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160	
	컴퓨터공학부		190	공학
공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160	
		건축설계학전공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	에너지환경공학전공		공학
		신소재공학전공		공학
		식품영양학전공		자연과학
		글로벌생명공학전공		공학
	레포츠과학부	운동처방학전공		예·체능
		레저스포츠전공	90	
		경호전공	40	
총 계			2,435	

<개정 2015.04.24.>

2016학년도 입학정원표

대학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140	공학	
		영화과	40	예·체능	
		뮤지컬과	30		
		연기과	30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학전공	180	예·체능	
		패션디자인학과	40		
국제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20	인문·사회	
		글로벌금융전공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50		
		일본어학과	50		
		중국어학과	60		
	국제학부	국제통상학전공	165		
		국제물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20		
		방송영상전공	120		
	사회복지학부	광고PR전공			
		사회복지학전공	110		
	관광학부	청소년상담심리전공			
		호텔경영학전공	150		
		관광경영학전공			
	보건의료계열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경찰행정학과	40		
		보건행정학과	40	인문·사회	
		임상병리학과	40	자연과학	
		간호학과	60	자연과학	
		치위생학과	40	자연과학	
교양대학	방사선학과	방사선학과	25	자연과학	
		작업치료학과	40	자연과학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160	공학	
	건축토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190		
		건축공학전공	160		
		토목공학전공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	건축설계학전공			
		에너지환경공학전공	140	공학	
		신소재공학전공		공학	
		식품영양학전공		자연과학	
체육대학	레포츠과학부	글로벌생명공학전공		공학	
		운동처방학전공	90	예·체능	
		래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40		
총 계			2,470		

<개정 2014.04.11.>

2015학년도 입학정원표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40		
	글로벌금융전공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60		
	일본어학과	60		
	중국어학과	73		
국제학부	국제통상학전공	185		
	국제물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20	인문·사회	
	방송영상전공	160		
	광고PR전공			
	영상문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120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150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보건의료계열	경찰행정학과	40		
	보건행정학과	40		
	임상병리학과	40		
	간호학과	60		
	치위생학과	40		
	방사선학과	25		
	작업치료학과	40		
메카트로닉스 융합공학부		160	공학	
컴퓨터공학부		190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160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	에너지환경공학전공	140	공학	
	신소재공학전공		공학	
	식품영양학전공		자연과학	
	글로벌생명공학전공		공학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180	예·체·능	
	디자인학전공	180		
레포츠과학부	패션디자인학과	40		
	운동처방학전공	90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40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디지털콘텐츠학부	140	공학	
	영화과	40	예·체·능	
	뮤지컬과	30		
	연기과	30		
	총 계	2,593		

<개정 2013.03.01.>

2014학년도 입학정원표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240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70 70 80		
국제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국제물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185		
영상매스컴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 영상문학전공	20 160	인문·사회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전공	120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150		
보건의료계열	경찰행정학과 보건행정학과 임상병리학과 간호학과 치위생학과 방사선학과 작업치료학과	40 40 40 60 40 25 40	인문·사회 자연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80 40 40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90	공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160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글로벌생명공학전공	140	공학 공학 자연과학 공학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전공 디지털영상제작전공 애니메이션&비주얼아이펙트전공	140	공학	
디자인대학	디자인학부	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과	180 40	
레포츠과학부	운동처방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90 40	예·체·능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과	40 30 30	인문·사회 예·체·능	
	총 계	2,620		

<개정 2012.09.01>

2013학년도 입학정원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40		
	글로벌금융전공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70		
	일본어학과	70		
	중국어학과	80		
국제학부	국제통상학전공	185		
	국제물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영상매스컴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20	인문·사회	
	방송영상전공	160		
	광고PR전공			
사회복지학부	영상문화전공	120		
	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150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보건의료계열	경찰행정학과	40	인문·사회	
	보건행정학과	40		
	임상병리학과	40		
	간호학과	60		
	치위생학과	40		
	방사선학과	25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작업치료학과	40	자연과학	
	전자공학과	80		
	산업경영공학과	40		
	메카트로닉스공학과	40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190	공학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160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	에너지환경공학전공	140	공학	
	신소재공학전공		공학	
	식품영양학전공		자연과학	
	글로벌생명공학전공		공학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전공	140	공학	
	디지털영상제작전공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220	예·체능	
	시각디자인학전공			
	환경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			
레포츠과학부	운동처방학전공	90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40	인문·사회	
	뮤지컬과	30		
	연기과	30	예·체능	
	총 계	2,620		

<개정 2011.06.01><개정 2011.09.01>

2012학년도 입학정원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240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70 70 80	
국제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국제불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International Studies과	200 20	
영상매스컴학부	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 영상문화학전공	160	인문·사회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전공	120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경찰행정학과	150 40	
보건의료계열	보건행정학과	40	인문·사회
	임상병리학과	40	자연과학
	간호학과	60	자연과학
	치위생학과	35	자연과학
	방사선학과	25	자연과학
	작업치료학과	35	자연과학
	전자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80 40 40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컴퓨터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190	공학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160	
에너지/생명공학부 (공학)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글로벌생명공학전공	140	공학 공학 자연과학 공학
	게임전공	140	공학
	디지털영상제작전공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140	
	산업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환경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	220	
디자인학부	운동처방학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영화과	90 40 40	예·체능
	뮤지컬과	30	인문·사회
	연기과	30	예·체능
	총 계	2,625	

<개정 2010.06.01><개정 2010.09.01>

2011학년도 입학 정원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240	인문·사회	
	금융선물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회계학전공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80		
	일본어학과	80		
	중국어학과	80		
국제학부	국제통상학전공	200	인문·사회	
	국제불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영상매스컴학부	International Studies과	20		
	방송영상전공	160		
	광고PR전공			
	영상문화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120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150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경찰행정학과	40		
보건의료계열	보건행정학과	40	인문·사회	
	임상병리학과	40		
	간호학과	60		
	치위생학과	25		
	방사선학과	25		
	작업치료학과	15		
	전자공학과	80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시스템경영공학과	40		
	메카트로닉스공학과	40		
	컴퓨터공학전공	190	공학	
컴퓨터정보공학부	소프트웨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170		
	건축설계학전공			
	에너지환경공학전공			
에너지/생명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140	공학	
	식품영양학전공			
	글로벌생명공학전공			
	게임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디지털영상제작전공	140	공학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산업디자인학전공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학전공	235	예·체능	
	환경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			
	운동처방학전공			
레포츠과학부	레저스포츠전공	90		
	경호전공	40	인문·사회	
	영화과	40		
임권택영화예술대학	뮤지컬과	30	예·체능	
	연기과	30		
	총 계	2,640		

<개정 2009. 9. 1> <개정 2010.03.01>

2010학년도 입학 정원

학부	전공/학과	모집 정원	계열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240	인문·사회
	금융선물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회계정보학전공		
외국어계열	영어학과	80	인문·사회
	일본어학과	80	
	중국어학과	80	
국제학부	국제통상학전공	200	인문·사회
	국제물류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International Studies과		20	
영상매스컴학부	방송영상학전공	160	인문·사회
	광고PR학전공		
	영상문화학전공		
사회복지학부	사회복지학전공	120	인문·사회
	청소년상담심리전공		
관광학부	호텔경영학전공	150	인문·사회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경찰행정학과		40	
보건의료계열	보건행정학과	40	인문·사회
	임상병리학과	40	자연과학
	간호학과	40	자연과학
	치위생학과	25	자연과학
	방사선학과	25	자연과학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전자공학과	80	인문·사회
	시스템경영공학과	40	
	메카트로닉스공학과	40	
컴퓨터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200	인문·사회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180	공학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에너지/생명공학부	에너지환경공학전공	140	인문·사회
	신소재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신발지식공학전공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전공	140	인문·사회
	디지털영상제작전공		
	애니메이션전공		
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전공	240	예·체능
	시각디자인학전공		
	환경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		
레포츠과학부	운동처방학전공	100	인문·사회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영화과	40	예·체능
	뮤지컬과	30	
	연기과	30	
총 계		2,640	

<개정 2008. 9. 12>

2009학년도 입학 정원

<개정 2006.10.1> 2007학년도 입학 정원

계열	구분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명) 주간
인문 사회	경 영 학 부	경영영어영문 영어영어영어 영어영어영어 영어영어영어 영어영어영어 영어영어영어 영어영어영어	240
	외 국 어 계 열	영어영어영어 일본어영어영어 중국어영어영어	80 80 80
	국 제 관 계 학 부	국제국제국제 국제국제국제	240
	영 상 매 스 캠 학 부	디비디비디비 영화영화영화 영화영화영화	240
	사 회 복 지 학 부	공장공장공장 사년사년사년 사회사회사회	120
	관 광 학 부	호관호관호관 관례관례관례 관학관학관학	110
	소 계		1,190명
자연과학	보 건 의 료 계 열	임상병리학과	30
소 계		30명	
공학	정보 시스템 공학 계열	전자공학과	70
		시스템경영공학과	40
		메카트로닉스공학과	40
	컴퓨터 정보 공학 부	컴퓨터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280
	건축토목 시스템 공학 부	건축설계전공 건축설계전공	200
	응용생명공학 부	환경생물공학전공 환경생물공학전공	150
	디지털콘텐츠학부	게임프로그래밍전공 디자인프로덕션전공	160
소 계		940명	
예·체능	디지털디자인학부	프로젝트디자인학전공 로열디자인학전공 스페셜티디자인학전공 패밀리미디어디자인학전공	280
	레포츠과학부	건전체육전공 강체육전공	140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영화연기전공 극장연극연기전공	60
소 계		480명	
총 계		2,640명	

2006학년도 입학 정원

계열	구분	학과 및 전공	입학정원(명) 주간
인문사회	경 영 학 부	영어·영문학·영어학·영어학·영어학·영어학	240
	외 국 어 계 열	영어·일본어·중국어	80
		영어·영어학·영어학·영어학	80
	국 제 관 계 학 부	국제통상학·국제관광학·국제학·국제학·국제학·국제학	240
	영 상 매 스 캠 학 부	영상미디어·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영화제작	240
	사 회 복 지 학 부	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120
이공	관 광 학 부	광학·텔레비전학·방송학·영화·영상학	120
	소 계		1,200명
	정보시스템공학계열	전자공학과	80
		시스템경영공학과	40
	컴퓨터정보공학부	메카트로닉스공학과	40
		컴퓨터공학과	280
		건설환경학	200
	건축토목시스템공학부	건축설계	160
	응용생명공학부	화생공학	160
	디지털콘텐츠학부	디자인프로덕션전	160
예·체능	소 계		960명
	디지털디자인학부	프로젝트디자인학·디자인학·디자인학·디자인학·디자인학	280
	레포츠과학부	건강증진학·스포츠학·체육학	140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연기전·극·영화연기전	60
	총 계		480명
	총 계		2,640명

(별표2) <개정 2010.12.10., 2011.03.01., 2012.03.01., 2015.03.01., 2017.03.01.>

학사학위 수여표

학위종별	학과 및 전공	비고
경영학사	경영학전공, 경영정보학전공, 인터넷경영정보학전공, 금융선물보험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회계정보학전공, 회계학전공, 글로벌금융전공	
문학사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중국어학과, 방송영상전공, 광고PR전공, 영상문학전공, 청소년상담심리전공, 영상문예창작전공, 미디어창작전공	
국제통상학사	국제통상학전공	
동아시아학사	동아시아학과	
물류학사	국제물류학전공, 물류유통학전공	
국제학사	국제관계학전공 국제지역비즈니스학전공	
	International Studies과	
사회복지학사	사회복지학전공, 공공사회복지전공, 임상사회사업전공	
관광학사	호텔경영학전공, 관광경영학전공, 이벤트/컨벤션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경찰학사	경찰행정정책학과	
임상병리학사	임상병리학과	
보건행정학사	보건행정학과	
간호학사	간호학과	
치위생학사	치위생학과	
이학사	방사선학과, 식품영양학전공	
작업치료학사	작업치료학과	
공학사	전자공학과, 시스템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 메카트로닉스공학과, 컴퓨터공학전공, 컴퓨터&인터넷공학전공, 소프트웨어공학전공, 멀티미디어공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건축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4년제), 에너지환경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신소재공학전공, 글로벌생명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신발지식공학전공, 게임전공, 디지털영상체작전공, 디지털프로덕션전공, 애니메이션전공, 애니메이션&비주얼이펙트전공,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컴퓨터공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토목공학전공	
건축학사	건축설계학전공(5년제)	
디자인학사	디자인학전공, 산업디자인학전공, 프로덕트디자인학전공, 시각디자인학전공, 비쥬얼디자인학전공, 환경디자인학전공, 스페이스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영상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과	
체육학사	운동처방학전공, 건강스포츠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전공, 경호정보전공	
예술학사	영화과, 뮤지컬과, 연기과	

주) 1)*는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이수시 학위명칭임

2)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공(학과)에서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미이수시 공학사로 표기

(별표3)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명)		
			주간	야간	계
인문	e-비지니스학부	인터넷경영정보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회계정보학전공	200		320
		인터넷경영정보학전공 금융보험학전공 마케팅학전공		120	
	디지털영상매스컴학부	디지털방송전공 광고PR전공 Film & Video전공 애니메이션전공 미디어창작전공	200		200
	국제관계학부	국제통상학전공 국제물류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국제지역학전공	160		240
		국제통상학전공 국제관광학전공		80	
	외국어학부	영어전공 일본어전공 러시아어전공 중국어전공	240		360
		영어전공 일본어전공 러시아어전공 중국어전공		120	
소 계			760	320	1,080
자연	정보시스템공학부	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메카트로닉스공학전공	160		240
		전자공학전공 산업공학전공		80	
	인터넷공학부	컴퓨터&인터넷공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240		360
		컴퓨터&인터넷공학전공 게임&멀티미디어공학전공 정보네트워크공학전공		120	
	건설공학부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건축설계학전공	120		200
		건축공학전공 토목공학전공		80	
	응용공학부	환경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식품생명공학전공	120		240
		환경공학전공 화학공학전공 신발지식공학전공		120	
소 계			640	400	1,040

3-1-1-54 제1장 학부

계열	학부	전공	입학정원(명)		
			주간	야간	계
예·체능	디지털디자인학부	프로덕트디자인학전공 비쥬얼디자인학전공 스페이스디자인학전공 패션디자인학전공 멀티미디어디자인학전공	240		280
		비쥬얼디자인학전공		40	
	레포츠과학부	건강스포츠전공 레저스포츠전공 경호정보전공	120		120
	공연예술학부	뮤지컬전공 연극전공	80		80
소 계			440	40	480
총 계			1,880	760	2,640

(별표 4)

학교기업명	연계학부(전공)	사업종목
DSM&C (동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컴퍼니)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방송영상물 및 영화제작
Animations(애니모션)	임권택영화영상예술대학 디자인학부	애니메이션 제작

(별표 5) 연계전공

연계전공	참여학부(전공)	학위
지식재산학	글로벌경영학부, 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컴퓨터공학부,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지식재산학사
벤처창업학	글로벌경영학부, 디자인학부, 디지털콘텐츠학부, 컴퓨터공학부, 메카트로닉스융합공학부	벤처경영학사
한국어·비즈니스학	글로벌경영학부, 동아시아학과	한국어·비즈니스학사

(별표 6) 교양학위트랙

학위종별	교양학사학위트랙	비고
교양학사	공공서비스	
	문화콘텐츠	
	소프트웨어응용	
	기업가정신	
	융합기반교양	

학칙 3-1-1-55

(별지서식 1)

호			
졸업증서			
성명 : 19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부(전공,	부전공)
를 이수하고 학사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증명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20 년 월 일			
동서대학교총장			
교육부학위등록번호 : 동서대 (학)			

※ 학부 : 학부, 계열, 대학

※ 전공 : 전공, 부전공, 학과, 학부

3-1-1-56 제1장 학부

(별지서식 2)

제 호

수료증서

성명 :
19 년 월 일 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 학부 전공 제 학년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증명
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19 년 월 일

총장
동서대학교
OO 박사 0 0 0

인